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53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윤준병 · 송옥주 · 임미애  
문대림 · 이성윤 · 전종덕  
임호선 · 김윤 · 임오경  
강준현 · 전용기 · 최혁진  
서영석 · 김교홍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 관련 위원회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한 심사 및 의사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고도의 청렴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 및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의제 대상에 건축위원회의 위원 이외에 건축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분쟁위원회 위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여 건축 관련 심사 및 분쟁 조정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축 행정 관련 국민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호 등).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호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건축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 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 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 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p> <p>1. 제4조에 따른 <u>건축위원회의</u> <u>위원</u></p> <p>1의2. ~ 5. (생략) <u>&lt;신 설&gt;</u></p>	<p>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 제) ----- ----- ----- ----- ----- ----- ----- ----- -----. 1. ----- <u>건축위원회의</u> <u>위원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u> 1의2. ~ 5. (현행과 같음) 6. 제88조에 따른 <u>분쟁위원회의</u> <u>위원</u></p>